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. 29 선고 2020가단118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3,673,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673,833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근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전진우

별지